

## 사법제도를 존치시켜라



송희성

· 前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대학원장

사법 시험 제도를 대체하는 법조인 양성방법으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인은 이제도의 채택단계에서부터 신문·법률지 등에서 이제도의 장·단점과 사법시험의 폐지의 부당성에 대하여 수차 언급한 바 있고, 나의 견해가 강원도 KBS에 보도된 바도 있다. 사법 시험 제도를 「로스쿨」로 대체한 이유는 주로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법 과목만을 시험해 선발하는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로는 법률 분쟁 해결, 또는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학교 강의를 도외시한 체 학원에 가서 암기 위주의 「기능적 공부」에 매달리는 상황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간 골방에서 시험 준비에 매달리다 보니, 법조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윤리·인격에 문제가 있고, 장기간 노력에도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와 셋째의 문제에 관하여 할 말이 많지만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첫째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고, 사법시험의 병행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회계학, 각종공학, 의·약학 등의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을 법조인으로 흡수하려는 의도는 미시적으로 보면 옳아 보인다.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위법여부 판단 또는 법률적 분쟁 등에 관여함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당면 문제를 보다 신속 정확히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까지 거쳐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검사가 되어, 폭행으로 이가 부러져 경찰로부터

송치되어 온 사건을 담당 하였다. 그러나 치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까지 있는 그 검사가 구강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이는 거의 저절로 부러진 것이고, 폭행 치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보도된 것을 본 일이 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경우를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거시적으로 국가의 인적자원의 배분 면을 도외시한 발상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법학이거주의」 사고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배분을 간과한 생각이다. 경제학, 회계학, 공학, 의·약학, 물리학, 화학 등을 전공한 우수자가 「로스쿨」로 진학하면, 그 분야의 발전은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우수해서 그 분야로 진학한 자들이 졸업 후 딴 곳으로 가면 그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자들을 밀어내는 결과도 된다. 그 다음 법학 이외의 타 분야를 전공한 학부 졸업자가 법조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로스쿨에 오느냐는 극히 의문이다. 왜냐 하면 「로스쿨」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는 자기 전공 분야는 학점 취득을 위한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를 하고, 법학 서적을 뒤적거리면서 졸업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공자를 유인하려는 현재의 제도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특히 음악·국문학·영문학·역사학·기타 인문·예술 등의 계통의 공부에 법조 실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극히 의문이다. 내 지식 하나가 「컴퓨터 학」 교수로 있는데, 석사까지 마쳤을 때 그 내용과 문제점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타 전공자들이 학부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의 기초를 갖추고 있더라도 「로스쿨」3년간 손을 때면 그 지식이 얼마나 남아 있을 까도 의문이다. 현재 수사 실무에서는 회계 학 기타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자들의 협조를 받고, 재판에서도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의 증언·감정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대, 회계학 전공자가 「로스쿨」을 졸업 하였을 때 실무 경험이 없는 그 기초 지식이 수사·재판·변호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기간 면에서나 「강의의 긴장도」 면에서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법률 지식만 부족한 법조인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로스쿨」 졸업생을 상대로 한 변호사 시험은 시험문제 자체가 암묵리에 「담합」(?)한 느낌을 받았다면 오해 일까. 이렇게 볼 때 2016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려는 「사법시험」 제도의 병행적 존치가 필요하다. 그 인원은 200에서 300이 적당해 보인다. 지면 관계상 상세히 언급할 수 없으나, 로스쿨 졸업생의 법학 지식의 부족, 비싼 등록금, 기회 균등에 반하는 점 등을 생각하면, 사법시험제도

의 병행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뢰인의 비용으로 변호사가 길러진다」는 항간에 돌아 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혹평하는지 모르나, 여유 있는 자가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입학 할 수 있는 「귀족학교」라는 비판과 법률 지식이 함량미달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지적에 경청하여야 한다. 노력하면 「신분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기회균등」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든다. 다만, 시험과목, 시험단계, 시험방법 등은 현행 제도를 수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기득권 유지 적 사고」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사법 시험 제도의 존치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점을 개선할 것과 비싼 등록금을 내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다.